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지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878

발의연월일: 2025. 2. 3.

발 의 자: 박지원·김용민·이건태

전용기 • 이성윤 • 전진숙

서영교 · 문진석 · 임미애

박홍배 · 전현희 · 박균택

이재정 · 정진욱 · 장철민

장경태 • 이기헌 • 정준호

이재명 · 김문수 · 김준혁

허 영·조계워 의원

(23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,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.

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회의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청사 내부방송이나 인터넷 중계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나, 해당 방송에서 수어, 폐쇄자막,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편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지 않고 있어 시각·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.

이에 본회의 및 위원회의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둠과 함께, 중계방

송을 하는 경우 한국어수어, 폐쇄자막 등을 제공토록 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75조의2 신설). 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5조의2(중계방송 허용 등)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 안(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)에서의 녹음·녹화·촬영 및 중계방송(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.

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 어·폐쇄자막·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<u> <신 설></u> | 제75조의2(중계방송 허용 등) ① |
| |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|
| |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|
| | 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 의장 |
| | 이나 위원장은 회의장 안(본회 |
| | 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) |
| | 에서의 녹음・녹화・촬영 및 |
| | 중계방송(인터넷 등 정보통신 |
| | <u>망을 통한 중계방송을 포함한</u> |
| | 다. 이하 같다)을 회의규칙에서 |
| |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|
| | <u>있다.</u> |
| |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|
| |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 |
| | 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|
| | 위하여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|
| | 바에 따라 한국수어·폐쇄자막 |
| | •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|
| | 한다. |